사회복지 주간 동향 (20.9.21.~9.25.)

1. 중앙정부 정책 동향

1 중앙정부 복지현안

긴급생계지원, 내일키움일자리, 아동특별돌봄지원 안내 상담센터 운영

*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참고

* 9월 16일부터 보건복지상담센터(129), 국민권익위 콜센터(110)에서 보건복지부터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(안) 관련, 긴급생계지원, 아동특별돌봄지원, 내일키움일자리 기준 등을 안내

※ 보건복지부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확정된 예산이 아니며, 세부지원 기준 등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동 가능

【긴급생계지원】

* 지원 대상 : 코로나19로 인한 실직·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하여 생계가 곤란한 위기 가구 대상 긴급 생계자금을 지원

- ①코로나 19로 인해 소득 감소 등 피해가 발생하여, ②생계가 어려워졌으나, ③타 코로나 19 피해 지원 프로그램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 지급 원칙

<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적용 기준>

· 소득 : 기준 중위소득 75% 이하

가구원 수	1인	2인	3인	4인	5인	6인
기준 중위소득 75%	131만 8000	224만 4000	290만 3000	356만 2000	422만 1000	488만

· 재산 : 대도시 6억 원, 중소도시 3억5천만 원, 농어촌 3억 원 이하

· 위기사유 : 코로나19 확산 이전 대비 소득이 25% 이상 감소(증빙 방식 등 구체적 기준은 추후 발표 예정)

※ 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자격 보유만으로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님

- 기존 생계비 지원 복지 사업(생계급여, 긴급복지 등) 및 다른 코로나19 피해 지원 사업(새희망자금,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)과 중복 지원 불가

* 지원 절차 및 시기
  - 다른 지원 사업과의 중복 여부 확인을 위해 10월 중 온라인 및 현장 신청을 받아 자격여부를 조사할 예정(지원금:11월 중 지급 시작, 12월까지 지급예정)
  - 129 상담센터에서는 이 사업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으며, 구체적인 기준 등은 추후 발표되는 대로 안내할 수 있도록 할 예정
  - 다만, 국회 논의 결과에 따라 상기 결정 내용은 변동 가능

【내일키움일자리】

* 지원 대상 : 만 65세 미만 기준 중위소득 75% 이하의 저소득층에게 사회적 경제 영역 등의 일자리 제공
  - 가구별 건강보험료 납입액을 기준으로 참여가능 여부 확인 예정
  - 자활근로 및 타 재정지원 일자리 중복 참여자 제외
* 주요 내용 : 15개 시·도 광역자활센터 및 사회적 경제조직 등과 함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2개월간 단기 일자리 제공
  - 사회적 경제 영역의 미충족 수요 발굴 및 사회적 가치 실현 업무·프로젝트 등을 중심으로 일자리 지원 예정
  - 5,000명에게 2개월(11월~12월) 지원 예정으로 월 180만 원+2개월 근속 시 근속장려금 20만 원 추가 지급
  - 세부참여 기준 등 구체적인 요건 및 참여절차는 국회심의 및 예산확정 후 보건복지상담센터, 한국자활복지개발원 또는 광역자활센터를 통해 별도안내 예정

【아동 특별돌봄 지원】

* 지원 대상 : 어린이집·학교의 지속된 휴원·휴교로 아동양육가구에 불가피하게 발생한 돌봄부담 완화를 위해 '아동 특별돌봄 지원' 추진
  - 밀접 돌봄이 필요한 ▲미취학 아동(영유아) 및 ▲초등학생을 대상(총 532만 명)으로 맞춤형 지원
    · ▲미취학 아동('14.1~'20.9월 출생아, 단 초등학생 제외) / 약 252만 명
      ▲초등학생 등(초1~6학년, '08.1~'13.12월 출생아) / 약 280만 명
  - 집행신속성, 아동양육가구의 사용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현금지급(아동1인당 20만 원)
* 지원 절차 : 기 구축된 대상별 효과적인 전달체계를 활용하여 9월 내 지급 추진
  - 미취학 아동(약 252만 명)은 지자체에서 아동수당 수급계좌를 통해 지급
    · 초등학생 등(약 280만 명)은 교육부와 협조, 교육청을 통해 스쿨뱅킹 계좌(급식비, 현장학습비 등 납부용) 등을 활용하여 지급 추진
    · 스쿨뱅킹 계좌 미등록자, 별도계좌 지급희망자 등은 계좌신청(개별학교에서 안내)
  - 학교 밖 아동(초등연령('08.1~'13.12월생)의 초등학교에 재학하지 않는 아동)은 별도의 신청기간 동안 아동의 주소지 지역 교육지원청에 방문 신청하여 지급
    · 신청기간은 국회 예산 확정 이후 보도자료, 교육부·교육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별도 안내(10일 이상(근무일 기준 8~9일) 예정)
  - 기존 정보를 활용하여 신청절차를 최소화할 계획, 구체적인 지급방법·절차 등 세부사항은 별도 안내 예정

※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참고

2 중앙정부 복지현안

카드데이터 활용 아동돌봄쿠폰의 소비효과분석 결과 나와

< 2/4분기 소비위축 상황에서 아동 관련 지출,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>

❖ 지난 4월 정부에서 지급한 아동돌봄쿠폰을 지원받은 가구의 평균 소비지출이 6.3% 증가,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즉각적인 소비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남

*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위원회(위원장 국무총리) 민간위원 참여와 논의를 통해 '아동돌봄쿠폰 등 코로나19 관련 사회보장 지원사업에 대한 소비효과'를 9월 17일(목) 발표

- 이는 정부 지원 전·후, 실제 가구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빅데이터를 활용한 최초의 분석으로 아동돌봄쿠폰 지원가구와 미지원가구의 소비지출 차이, 소득수준별 소비지출의 변화, 지출 유형 별 차이 등을 분석*('20.8~'20.11,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, 사회보장위원회 제도조정전문위원)한 중간 결과물
  · 아동돌봄쿠폰 지원 가구, 미지원 가구(약 2만 가구)의 지급 전·후 20주 분석 지원전 기간(대조기간) : 2.3~4.12(10주), 지원기간 : 4.13~6.21(10주)
-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13일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아동양육 가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동 수당을 지급 받는 약 180만 가구의 보호자(아동수 기준 약 236만 명)가 사용하는 카드에 아동돌봄쿠폰 포인트 지급(국비, 9,500억 원)
- 8개 카드사 자료를 활용하여 아동돌봄쿠폰의 소비를 분석한 결과 지급 후 1달 이내에 배정액의 약 72%가 신속하게 집행되었으며 지역경제 등 국내 소비에 도움이 된 것으로 발표

  ※ (보도참고자료) 아동돌봄쿠폰으로 동네상권에 활력 불어 넣다.(5.11)

* 분석결과(서울대 산학협력단, 1차 분석 자료)

- 아동돌봄쿠폰 지원(4.13) 이후 카드지출 데이터를 지원대상 가구와 미지원 가구(대조군 활용)를 비교시 지원대상 가구의 평균 소비지출*이 6.3% 증가* 한 것으로 분석
  · 지급 후 10주간 주당 평균 1만5450원 추가지출, 지급 후 5주간 주간 평균 지출은 2만7280원 추가지출 한 것으로 분석
  · 20주 평균 가구지출(약23만 원) : 지원가구 24만5000원, 비지원가구 21만8000원

< 그림1 : 전체 가구 평균 카드지출액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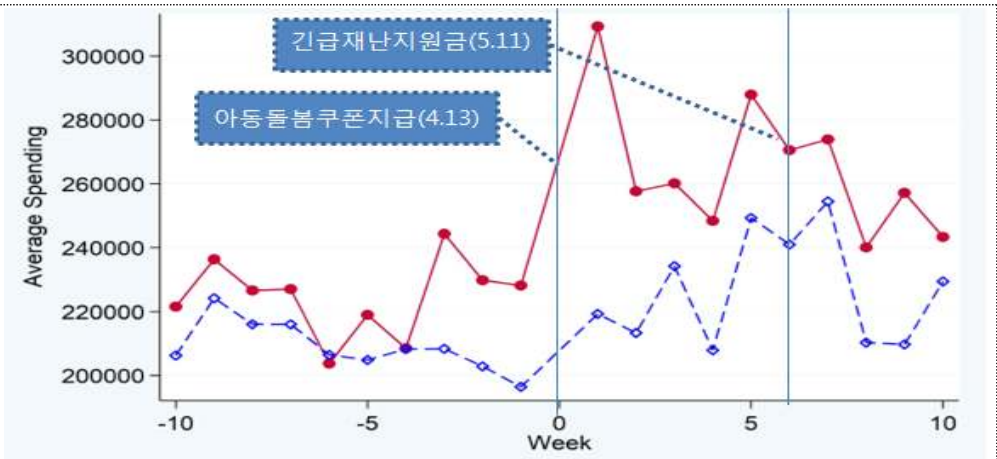

* (적색) 지원가구, (청색) 비지원 가구

※ 기간참고 : 0주(4.13~4.19), 5주(5.4~5.10), 10주(6.15~6.21)

- 소득분위별 소비효과는 소득 1분위의 경우 주당 2만7100원, 소득 2~4분위는 1만8000원이 증가하여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즉각적인 소비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남
  · (직전·후 5주 비교 기준) 소득 1분위 4만4620원, 2분위 : 3만1580원, 3분위 : 3만4100원, 4분위 : 3만1190원, 5분위 : 7800원

< 그림2 : 소득분위별 가구 평균 카드지출액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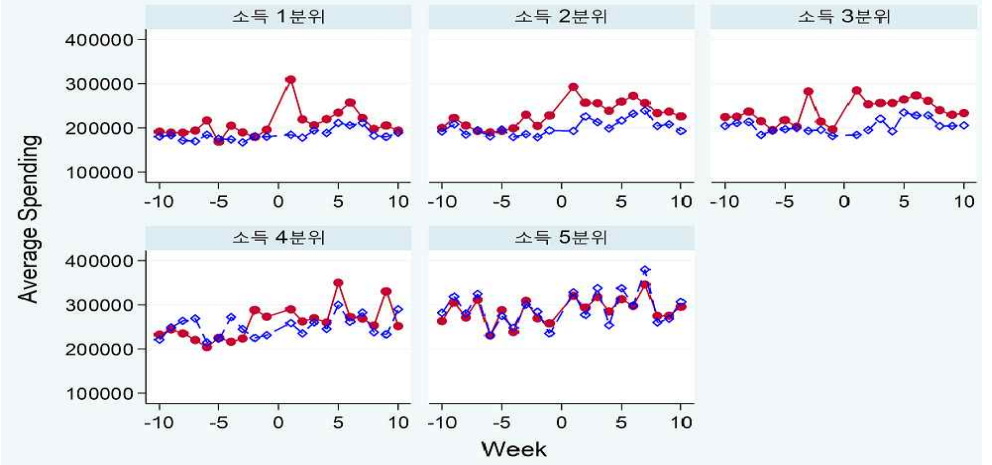

* (적색) 지원가구, (청색) 비지원 가구

- 소비의 지출유형별 분석에서는 아동관련 지출(학원, 서점, 문구·완구 등) 및 중소·영세가맹점 등에서의 지출이 증가
  · 아동무관(커피숍, 헬스·뷰티) 및 대조군에서는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음

< 그림3 : 아동관련 카드지출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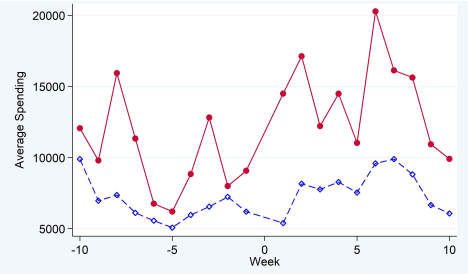

* (적색) 지원가구, (청색) 비지원 가구

<그림4:중소가맹점(30억 미만) 카드지출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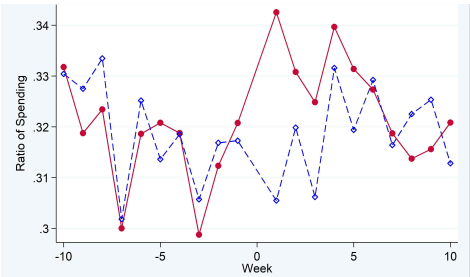

* (적색) 지원가구, (청색) 비지원 가구

* 보건복지부는 신용카드사 등의 협조를 얻어, 중간결과를 바탕으로 ①전년동기 소비 비교, 지역별 소비차이 등을 보다 세밀하게 분석하고 ②사회보장사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조사, ③복지국가 유형별 코로나19 지원 정책을 유형별로 비교분석하여 오는 12월에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할 예정

※ 보도자료 참조(사회보장총괄과, 아동복지정책과)

3 중앙정부 복지현안

초등생 형제 화재사건 관련, 돌봄 공백 최소화, 아동보호 강화 추진

< ▲취약계층 아동 집중 모니터링, ▲가정방문을 통한 돌봄사각지대 점검, ▲ 방임 아동 대응 법원 협의 등 >

* 최근 초등생 형제가 보호자 부재 중 가정에서 화재 사고를 당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
  - 보건복지부는 코로나 상황에서 위기 아동의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, 방임 등 학대 발생 시 아동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례관리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사고 분석을 통한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
* 조치는 취약계층 아동지원, 돌봄서비스 사각지대 점검, 학대 대응의 3분야에서 이루어지며,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음
  - (집중모니터링) 취약계층 사례관리(드림스타트) 아동 약 7만 명 전체를 대상으로 한 달간 돌봄 공백 및 방임 등 학대 발생 여부 등을 집중 점검
    · 9.22~10.21. 한 달간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가정 집중 모니터링 기간 안내
  - 사례관리 대상 가구 방문을 확대하여 급식지원 점검, 긴급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·제공하고, 아동 및 가족에게 화재 예방을 위한 재난대비 안전 교육도 실시할 예정
    ·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19 방역지침 철저 준수
    · 화재 원인과 예방법, 화재 시 대처법, 소화기 사용법 등
  - 특히, 취약계층 아동들이 코로나19 상황에서 돌봄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취약계층 가정 방문시 긴급돌봄 서비스 필요성을 면밀히 조사, 돌봄이 필요한 아동의 긴급돌봄 신청을 지원하여 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조치 추진
  - (돌봄서비스) 코로나19 유행 이후 현재까지 아동 돌봄서비스의 사각지대 방지를 위해 지역아동센터·다함께돌봄센터를 중심으로 긴급돌봄을 실시 중 (교육부 주관 초등돌봄교실도 실시)
  - 긴급돌봄 운영 시 코로나19로 인해 위기상황에 처한 아동들이 돌봄서비스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, 일선 지방자치단체 및 센터를 대상으로 오늘(9.18) 요보호아동 보호 강화에 관한 협조를 요청
    · ①센터와 관계기관 등과의 소통·연계 강화, ②사회적거리두기에도 불구, 꼭 필요한 경우 아동들이 긴급돌봄 서비스 또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일시 돌봄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 조치 당부 등
  - (학대 대응) 또한 방임 등 아동학대 발생 시 충분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원과의 협의를 추진할 계획

· 신체적 학대 뿐만 아니라, 방임 아동 및 정서학대 피해 아동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아동보호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전문가 중심으로 아동학대 처벌강화 전담팀(TF)를 구성하여 양형기준 및 피해아동보호명령 강화 등 제안서를 작성, 법원과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.(7.29 발표된 「아동·청소년 학대 방지 대책」에 포함)

- (사건 분석) 아울러, 지난 해 아동 중심의 통합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기관으로 '아동권리보장원'이 새롭게 출범한 바, 아동권리보장원 주관으로 이번 화재 사건을 긴급 분석하여 문제점을 점검하고, 필요 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

참고	아동학대 조사 공공화 개요

* 주요내용 : 시군구별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 아동학대 현장조사, 보호계획 수립 등 담당하고, 기존에 아동학대 업무 수행중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사례관리에 집중
* 추진배경 : 현재 아동학대 현장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대부분(96%, 65개/68개)이 민간위탁(비영리법인)으로 운영
  - 아동분리, 친권제한 등 강제력을 행사하는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민간인이 담당, 현장조사 거부 및 신변위협 빈번
    · 미국·영국·일본의 경우, 지방공무원이 현장조사 및 학대판정 권한 보유
* 추진경과
  - '19.5월 '포용국가 아동대책' 통해 아동학대 대응체계 전면개편 기본 추진계획 발표
  - '20년 전국 118개 선도지역 290명 사회복지공무원 기준인건비 승인 ('19.10월, 행안부)
  -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·역할 등 아동학대조사 공공화 관련 내용을 담은 「아동복지법」 개정('20.4월)
  - '20.7월 '아동·청소년 학대 방지대책'을 통해 아동학대 조사공공화 조기 추진 발표('22년→ '21년 완료)
* 추진계획 : '20.10월부터 118개 선도지역 아동학대 조사 이행 실시, '21년까지 모든 시군구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
  - '21년 배치 인력 규모는 행정안전부와 협의 중

※ 보도자료 참조(인구정책총괄과, 아동권리과, 아동학대대응과)

4 중앙정부 복지현안

보건복지부 "디딤씨앗통장 만기 적립금 찾아주기 서비스" 전개한다.

< 올해 7월 기준, 만 24세 이상 5,487명이 찾아가지 않은 만기 적립금은 100억 원 (1인 평균지급액은 약 180만 원/최대지급액은 약 3,600만 원) >

* 보건복지부·아동권리보장원은 디딤씨앗통장(아동발달지원계좌) 만기 적립금(가입자 저축금 및 정부지원금) 찾아주기 서비스를 연말까지 진행
  - 2007년 저소득층 아동*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도입된 '디딤씨앗통장'은 아동이 만 18세가 될 때까지 보호자나 후원자가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5만 원('20년 기준) 범위 내에서 같은 금액을 맞추어 적립
    · 기초생활수급가구(생계, 의료급여)의 만12세~17세 아동과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·가정위탁 보호아동 및 장애인 생활시설 입소 아동 등
  - 적립금은 만 18세 이후부터 대학 학자금, 취업을 위한 기술자격 및 취업 훈련, 창업, 주거 마련 등의 자립을 위한 용도로 사용 가능하며, 만 24세부터는 사용 용도 제한없이 사용가능
* 이번 '만기 적립금 찾아주는 서비스'는 올해 7월 기준 만24세 만기연령이 되었으나 찾아가지 않은 적립금 100억 원을 찾아가도록 돕는 것
  - 만기 적립금 해지 대상은 디딤씨앗통장 가입자 중 만24세 ~ 만30세이면서, 아동복지시설·가정위탁보호 및 장애인생활시설 아동이거나 기초생활수급 아동 등 5,487명
    · 해지신청은 통장 명의자 본인이 직접 통장,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해당 거주지 시·군·구청 방문을 통해 가능하고, 대상자 여부 확인은 거주지 시·군·구청에 연락하여 주민번호 조회를 통해 확인 가능
    · (접수방법) 문자전송(1670-1834), 팩스(02-6283-0499), 전자우편 (adongcda@ncrc.or.kr)
    · 후원신청서는 디딤씨앗통장 홈페이지(www.adongcda.or.kr)에서 다운로드 가능

붙임 1	디딤씨앗통장아동 만기적립금 찾아주기 서비스 개요

* 추진배경 : 디딤씨앗통장은 만기(만18세) 후 자립 용도*에 한해 해지(인출) 가능하나, 만24세 도달 시 사용용도 제한 없이 해지 가능

- 학자금, 기술자격·취업 훈련비, 창업자금, 주거 마련, 의료비, 결혼자금 등
- 그러나 미인출 계좌 수가 매년 증가하여 만24세 이상 미인출 적립금은 약 100억 원('20.7월 기준)에 이르는 등 적립금 적정 활용 미흡
  · 미인출 계좌('20.7.2) : 만18세~만24세 미만 : 32,064개(1,225억 원), 만24세 이상 : 5,487개(100억 원)

* 서비스 개요

- (대상) 만24세('20.7월 기준), 디딤씨앗통장 만기 해지 대상자 5,487명
- (만기 해지 예상액) 100억 원
- (캠페인 기간) '20.9.21.(월)부터 ~ 연말
- (만기 해지 절차)
- (신청인 본인) 디딤씨앗통장 해지 신청서를 해당 시군구청에 제출
  · 만24세 이상 만기 해지 시에는 적립금사용신청서와 사용용도 증빙서류 제출 불필요
- (시군구청) 대상 및 금액 확인 후 디딤씨앗통장 <적립금 지급 요청서>를 신청인에게 발급
- (신청자 본인) 디딤씨앗통장 <적립금 지급 요청서>와 통장 및 신분증을 지참하고, 해당 시군구 담당 신한은행(지점)을 방문하여 대금 지급 요청
- (신한은행 지점) 지급 요청서에 따라 계좌를 해지하고 지급 요청서 상의 입금 계좌로 지급

신청인(아동)	➡	시 · 군 · 구 담당	➡	신청인(아동)	➡	신한은행지점
해지신청서 작성 · 제출		대상 확인 및 지급요청서 발급		지급요청서 제출 (신분증 지참)		계좌 해지 및 금액 지급

붙임 2 디딤씨앗통장 정기 후원 안내

디딤씨앗통장

함께 모은 마음, 두 배의 희망으로

디딤씨앗통장이란?

후원자의 나눔 + 국가(지자체)의 지원 = 취약계층 아동의 자립실현

디딤씨앗통장은 취약계층 아동이 사회에 진출할 때 필요한 초기비용 마련을 지원하고자, **정부에서 운영하는 유일한 아동자산형성 지원사업**입니다. 통장을 개설한 아동이 매월 **후원자의 도움을 받아 저축하면 국가와 지자체가 월 5만원 내에서 동일한 금액을 매칭 지원**합니다. 하지만 지난 한 해(2019년) 지원 대상 아동 중 16%에 달하는 1만 3천여 명은 저축을 하지 못해 국가의 매칭지원금도 받지 못했습니다.
소중한 나눔을 통하여 아동의 자립을 지원해 주세요.

지원대상

보호대상아동	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
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(아동양육시설, 공동생활가정) 보호아동, 가정위탁 보호아동, 장애인생활시설 아동, 소년소녀가정 아동	만 12세 이상 만 18세 미만의 중위소득 40% 이하의 수급 가구(생계, 의료 급여) 아동 ※서울시는 꿈나래통장과의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규 가입 대상 제외

사용용도

디딤씨앗통장은 만 18세 이후 학자금 등 아동의 자립을 위한 용도에 한하여 사용가능하며, 지자체의 승인 없이는 보호자도 해지가 불가합니다.

학자금 | 주거마련 | 기술자격 훈련비 | 의료비 | 결혼자금 | 창업지원

후원참여방법

- 접수방법 : 후원신청서 작성 후 스캔본 혹은 사진 제출
  이메일 adongcda@ncrc.or.kr 팩스 02-6283-0499 문자 1670-1834
- 정기후원 시 : 신청 접수 후 아동권리보장원에서 매월 자동이체로 인출
- 일시후원 시 : 국민 011201-04-214048 농협 317-0018-8213-91 우리 1005-503-870563 (예금주 아동권리보장원) 중 후원자가 선택하여 입금 후 신청 접수

※ 후원신청서는 디딤씨앗통장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

문의 (03150)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71, G타워 6,7층 아동권리보장원 1670-1834 www.adongcda.or.kr

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신한은행

※ 보도자료 참조(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/ 아동권리보장원)

2. 통계로 보는 복지

1 중앙 통계현안

2020년 8월 고용동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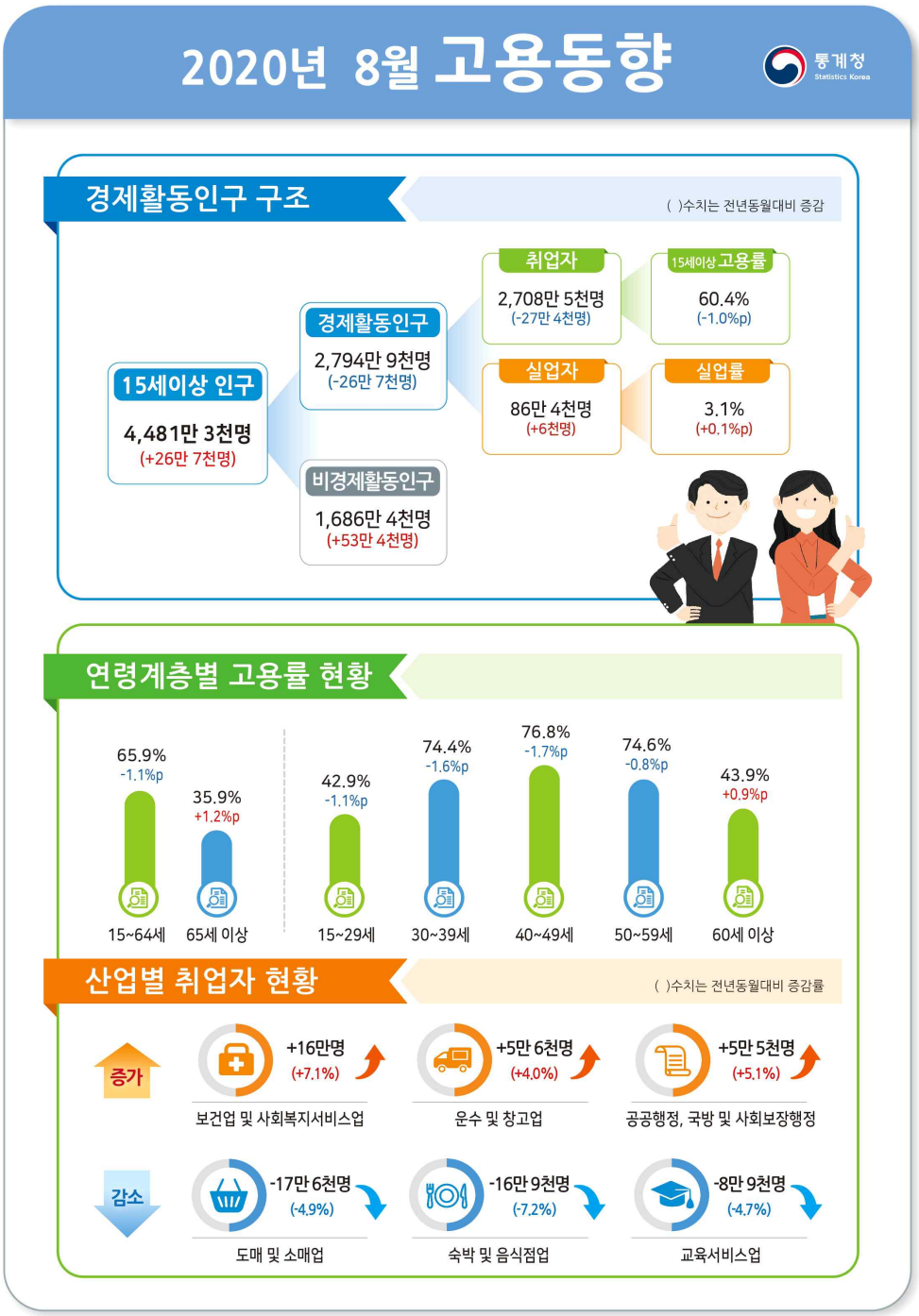

※ 자료:통계청 정책뉴스